

【 3 】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의년월일 : 1993. 11. 6

제 의 자 : 의 장

주 문

93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실시
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하려는 것임

【 4 】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출년월일 : 1993. 11. 6

제 출 자 : 조사특별위원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의회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조사기간 : 93. 10. 7 - 10. 13
- 조사대상기관 :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관리소
- 조사결과 : 별첨 보고서

1993년도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

1.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 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있음.

2. 조사특위 운영기간 : 1993년 10월 11일 - 13일 (3일간)

3. 조사실시 대상기관 : 환경보호과, 양주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4. 조사반

위원장	간사	위원	보조직원
한상익	권선안	안광순 우충국 이은선 김재현 정명훈	전문위원 홍영섭 지방행정주사보 이용달 속기사 2명

5. 조사대상

양주군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6. 주요조사 실시내용

- 양주군 위생처리장 설치에 관한 계획 적정여부
- 처리용량 산출 판단내역 적정여부
- 분뇨처리장 운영실태 정상여부
-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관내 대행업소의 지도감사 및 외부 분뇨유입 여부

7. 조사결과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 양주군 위생처리장 설치 계획은 1989년도 계획하여 1990년 8월 2일 당초 환경 철로부터 일 30KL 처리계획이던 것을 향후 인구의 증가 및 여건 변경을 고려 1990년 12월 1일 일 30KL에서 일 60KL로 늘려 1991년 1월 20일 분뇨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환경처로부터 받아 약 21억의 예산을 확보 1991년 9월 3일부터 1992년 9월 18일까지 상우종합 건설이 시공회사로 본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당시 인구 8만5천명을 기준 1일 1인당 0.55로 산출함과 5.3%의 인구 증가로 보아도 2,000년대까지는 충분하며 액상부식법으로 가장 위생적이고 모범적인 분뇨처리를 할 계획이 처리 가동 만1년도 안돼 용량 부족은 당시 산출용량 판단계획의 오차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2) 수거업체가 타시군의 분뇨유입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사전 지도점검 을 철저히 하여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 (3) 타시군에 비교하여 관내 분뇨유입업체가 4개소로 인하여 과당 경쟁과 영업상 이윤추구로 분뇨유입 예상되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4) 분뇨 발생이 많이 되는 시기와 적게 발생되는 시기를 조사 월별처리 계획을 수립 작업할 수 있는 량을 조정하여 수거업체에 사전 통보하고 또한 이를 주민에 계도 홍보하여 처리에 완벽을 기할 것
- (5) 91년도 분뇨위탁처리 비용이 38KL에 1억2,700만원의 비용지출에 비해 위생처리장 건설후 인건비 포함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예산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뇨유입 업자가 일반 가정에서 수거비용 철수 방법을 재검토 개선 하여 운영하기 바람.

(6)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탈취탑 소각로 후속악취시설 부분을 보완 정비하여 운영하기 바람.

나. 조사의견

위생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업무 성실로 정상 가동은 하고 있었으나 조사를 통하여 당초 계획이 정확한 산출 판단내역 미흡, 충분한 검토의 부족등으로 인한 외부 분뇨의 유입이 입증되는 한편 처리 과정에서 아직도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조사특위 운영중 위원 질문시 정확한 답변 없이 기피성 발언을 하는 등 업무 파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현재로선 처리 용량 부족은 없으나 앞으로 분뇨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대두 될 각종 시안에 대하여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5 】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11. 6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양여금, 도비보조금의 교부 지역등으로 사업의 적정추진이 지난하고 '94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와 유사성격인 동회계를 폐지코져 함.

주요골자

1.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